



【검토보고서】

2016. 8. 23(화)
의정협의회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최상열】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양주시청(자치행정과장)
- 나. 제출일 : 2016년 8월 17일
- 다. 검토일 : 2016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2017년 개원 예정인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 등에 민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시설

시설명	위치	규모	보육 정원	종 사 자		비고
				보육 교직원	미화원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남방동 1-1, 양주시청 4필지 내	지상3층 997.64㎡	89명	10명	1명	

- 위탁사무 :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기간 : 2017. 1. 1 ~ 2021. 12. 31.(5년)
- 운영재원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5조에 의함.

※ 정부지원 보조금, 보육료 수입, 사업주 비용부담(인건비 포함 운영비 50% 이상)

4. 검토의견

가.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근거 및 관계 법령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직장보육 시설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¹⁾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나. 양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계획

1) 민간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하는데 있음.

2) 민간위탁 대상 및 운영계획

○ 민간위탁 대상인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양주시청내 지상3층, 약 997㎡ 규모의 시설로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보육정원 89명, 보육교직원 10명과 미화원 1명으로 신설 운영 계획임.

※ 민간위탁 대상

시설명	소재지	규모	보육정원 (명)	종사자		비고
				보육교직원	미화원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남방동 1-1, 양주시청 4필지 내	지상3층 (997.64)	89	10	1	신설

○ 위탁기간은 「양주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양주시 훈령 제 233호, 2016. 9.12. 개정)에 따라 3년으로 정함.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16.9.12)

제3조(운영)

③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은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연간 운영 재원은 양주시에서「영유아보육법」제25조에 의한 보조금 2억3천만 원, 보육 인원에 따른 정부보육료 및 누리과정지원금 등 2억9천5백만 원을 합하여 연간 총 5억2천만 원 임.²⁾

※ 연간 운영 재원 (단위 : 천원)

운영비 총액	재 원		비 고
	정부보육료 등	시보조금	
523,802천원	295,752천원	228,050천원	세입예산은 연간 위탁운영비로 사용

다. 검토 의견

1) 민간위탁 필요성

○ 직장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영할 경우 양주시 공무원 기준인건비의 제한을 받게 되며, 보육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보육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경기도내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27개 기관 중 설치기관은 23개 기관으로 모두 위탁운영 중임.(참고자료 1).³⁾

2)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 (위탁비용) 사업주는 위탁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시행령 25조)
 -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 만0세(418천원), 만1세(368천원), 만2세(304천원), 만3~5세(220천원)

3) 경기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관 현황 : 23개 기관

※ 미설치 : 4개 기관 (양주, 하남, 의왕, 안성), 미대상 : 4개 기관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2) 위탁기간에 대한 검토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최초 위탁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⁴⁾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명시 규정은 없음.

- 직장 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에 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조례 및 훈령으로 정하여서 기간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그리고,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의 직장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대다수(23개소 중 19개소)가 3년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참고자료 1),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3) 기타 관리 운영에 대한 의견

○ 직장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89명으로 향후 안정적 시설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정원확보 및 유지 대책이 필요하며,

○ 보육에 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내년도(3월) 개원 및 위탁시설 정상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

5. 참고자료

참고 1 경기도내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연번	시·군명	설치년도	정원	운영방법(근거)	위탁기간(연장)
1	수원시	2001(시청)	49명	민간위탁(조례)	3년이내 (필요시 연장)
		2004(팔달구청)	74명		
2	고양시	2007	85명	민간위탁(훈령)	3년(필요시 연장)
3	성남시	2010	140명	민간위탁(훈령)	3년(필요시 연장)
4	용인시		80명	민간위탁(조례)	3년(규정없음)
5	부천시	1997	99명	민간위탁(계약)	3년
6	안산시	1997	150명	민간위탁(계약)	5년
7	남양주시	2003	62명	민간위탁(계약)	2년
8	안양시	2007	99명	민간위탁(훈령)	5년(1회 연장)
9	화성시	2008	99명	민간위탁(조례)	3년(1회 연장)
10	평택시	2016	74명	민간위탁(훈령)	3년(필요시 연장)
11	의정부시	1999	99명	민간위탁(계약)	5년(1회 연장)
12	시흥시	2004	45명	민간위탁(훈령)	3년(필요시 연장)
13	파주시	2008	44명	민간위탁(훈령)	3년(필요시 연장)
14	김포시	2012	135명	민간위탁(훈령)	3년(필요시 연장)
15	광명시	2000	96명	민간위탁(훈령)	3년(규정없음)
16	광주시	2009	70명	민간위탁(훈령)	3년(필요시 연장)
17	군포시	2010	99명	민간위탁(훈령)	3년(필요시 연장)
18	오산시	2012	20명	민간위탁(계약)	3년
19	이천시	2006	64명	민간위탁(훈령)	2년(필요시 연장)
20	구리시	2006	66명	민간위탁(지침)	3년(필요시 연장)
21	포천시	2003	60명	민간위탁(계약)	3년
22	여주시	2015	55명	민간위탁(조례)	3년(1회 연장)

23	과천시	2016	45명	민간위탁(훈령)	5년(1회 연장)
----	-----	------	-----	----------	-----------